2020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변경(안)

안건 번호 1 제출연월일: 2020. 10. 12.(월) 제 출 자: 배곧초등학교장 담 당 자: 행정6급 서혜은

1. 제안이유

2020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기 수립하였으나 발전기금 접수내역 변경에 따라 변경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함.

2. 근거

「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

3. 주요내용

가. 원안

• 수입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
학생 장학금 지원	1,714	연중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개인, 조직, 단체	1,714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물품	연중	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물품 (5대 783,810원 상당)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물품	연중	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물품 (1,870개 5,610,000원 상당)

• 지출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
학생 장학금 지원	1,714	연중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학생장학금 1,714	1,714

나. 변경안

• 수입계획서 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
학생 장학금 지원	1,714	연중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개인,조직,단체	1,714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물품	연중	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	물품 및 도서 (물품 5대 783,810원 상당) (도서 4,000,000원 상당)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물품	연중	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물품 (1,870개 5,610,000원 상당)

• 지출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
학생장학금지원	1,714	연중	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	학생장학금 1,714	1,714

붙임 2020학년도 배곧초등학교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 1부. 끝.

【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】

배곧초등학교 발전기금 운용계획서

1.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

가. 사업명: 학생장학금 및 학생복지 물품 지원,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나. 목적: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학금 및 물품 지원 ,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의 기부 물품

2.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

학교 내외의 조직, 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 또는 구성원외의 자로부터의 모금 및 기탁

3. 수입 및 지출계획

가. 원안

• 수입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
학생 장학금 지원	1,714	연중 (이월금포함)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개인, 조직, 단체	1,714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5대	2020년 4월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그래픽태블릿(펜테블릿) 5대(783,810원 상당)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1,870개	2020년 5월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손소독제 1,870개 (5,610,000원 상당)

• 지출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
학생 장학금 지원	1.714	연중	학생복지 및 학생	학생장학금	1.714
악성 성복교 시원	1,714	인공	자치활동의 지원	1,714	1,714

나. 변경안

• 수입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
학생 장학금 지원	1,714	연중 (이월금포함)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개인, 조직, 단체	1,714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5대	연중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	1. 그래픽태블릿(펜테블릿) 5대(783,810원 상당) 2. 도서 4,000,000원 상당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1,870개	연중	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기업	손소독제 1,870개 (5,610,000원 상당)

• 지출계획서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
학생장학금지원	1.714	М.Ā	학생복지 및 학생	학생장학금	1.714
의 생성의 급시권	1,714	연중	자치활동의 지원	1,714	1,714

2020학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(안)

안건 번호 2

제출연월일: 2020. 10. 12.(월) 제 출 자: 배곧초등학교장 담 당 자: 행정6급 서혜은

1. 제안이유

교특전입금(목적사업비) 및 시보조금 배정에 따라 세입액대비 반영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수익자부담경비 감액, 가 결산을 통한 미집행 사업예산의 타 사업 전환 및 코로나19방역 물품구입, 노후 기자재 확충 등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편성

2. 근거

「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」

3. 주요 내용

[단위: 천원]

	구분	금회 추경 금액	예산액	비고
	국고보조금(청소년비즈쿨)	1,800		
	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(찰현미구입비, 무상급식비)	-167,952		
	학교운영비전입금 (초등 및 유치원 기본운영비)	-1,962		
세입	목적사업비 (초등아동특별지원금,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,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지원금 및 원거리통학비, 행정실무사 인건비, 교원용컴퓨터 구매지원금, 코로나19 기초학력강사지원금 및 방역물품지원금, 특수학급사회복무요원 인건비, 보건교사보수교육비, 무상급식비)	306,258		
	수익자부담수입 (우유급식비 및 졸업앨범비)	-34,580		
	행정활동수입 (학교시설사용료, 예금이자, 폐식용유매각대금, 기타행정활동수입)	-6,438		
	기타수입 (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)	-12		
	Я	97,114		
세출	세출예산서 참조	97,114	3,556,903	

붙임 2020학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및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 끝.

2020학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서

【단위: 원】

번호	세부사업	세부항목	산출기초	기편성금액	추경금액	추경사유
1	학교급식운영	우유급식 비	초등 및 유치 원 우유급식비	64,981,000	-32,490,000	1. 사업의 필요성: 2학기 우유급식 미실시예상으로 인한 수익 자 부담금 전액 감액
2	학교급식운영	급식식재 료비	급식용 식재료 비 및 찰현미 구입비	804,491,000	-350,864,000	1. 사업의 필요성: 2020학년도 총 예상식재료비를 편성하였으나, 무상급식비 지원액 대비 과편성되어 9.30.자 현재 지원액으로 예산액 조정
3	학생및교직원 보건안전관리	학생건강 검사	1·4학년 건강 검사비 및 2·3·5·6학년 소변· 구강검사비	20,776,000	-20,776,000	1. 사업의 필요성: 2020학년도 1·4학년 학생건강검사 및 2·3·5·6학년 소변검사구강검사 사업의 취소로 인한 예산 전액 감액 추후 2021학년도 실시예정
4	학생및교직원 보건안전관리	보건실운 영	감염병예 방관 리	32,869,000	5,000,000	 사업의 필요성: 교실용 손소독제, 소독물티슈 등 감염병예방물품 구입 예산편성액: 5,000,000원 교특별도지원금: 2200원*1858명=4,88,000원
5	교직원복지	기타교직 원복지 지원	특수운영직군 피복비	_	600,000	 사업의 필요성: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군인 시설당직원, 시설미화원의 복지를 위한 피복비 편성 예산편성액: 200,000원*3명=600,000원
6	병설유치원기 본운영	유치원 시설장비 유지	유치원 환경개 선비 및 비품 구입비	_	1,358,000	1. 사업의 필요성: 병설유치원 현관 환경개선 공사 2. 예산편성액: 1,358,000원
7	병설유치원기 본운영	유치원 운영	유치원비품 및 기자재구입	4,041,000	3,000,000	 사업의 필요성: 병설유치원 놀이공간 내의 책장 및 교구보 관장 구입 소요예산액: 3,000,000원

번호	세부사업	세부항목	산출기초	기편성금액	추경금액	추경사유
8	기타 교육격 차해소	기타교육 격차해소 지원	기초학력강사 인건비, 월차 수당 및 4대보험 기관 부담금	_	17,520,000	1. 사업의 필요성: 코로나19로 인한 저학년학업결손에 따른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강사 2명 채용에 따른 4개월분의 월차수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학교 자체예산 편성 2. 소요예산액 -월차수당: 80,000원*4월*2명=640,000원 -4대보험기관부담금: 150,000원*4월*2명=1,200,000원 -기초학력강사 인건비:1,960,000원*4월*2명=15,680,000원 ※인건비 2명 4개월분 15,680,000원은 국고지원금으로 교부
9	방과후학교 운영	방과후 학교보조 인력운영	방과후코디 인건비	3,780,000	3,780,000	 사업의 필요성: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인한 방과후 코디 인건비 부족에 따라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 소요예산액: 630,000원*6월원=3,780,000원 소요 기편성예산액: 6개월분 3,780,000원 ※추후 방과후학교운영시 인건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
10	정보화실운영	정보화 기자재 교체 및 관리	교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	11,000,000	35,150,000	 사업의 필요성: 2015년 개교시 구입한 교원용 컴퓨터의 교체 필요, 컴퓨터 내용연수 5년에 따라 순차적 교체 예정 소요예산액: 37대*950,000원=35,150,000원 기편성액: 11,000,000원
11	정보화실운영	교원용 컴퓨터 국고지원 사업	교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 국고지원	_	11,400,000	1. 사업의 필요성: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 원용 컴퓨터 구입 교육부 지원금으로 13대구입예정 2. 교부액: 11,400,000원
12	부서기본운영	교육행정 실운영	행정실 노트북 구입	5,907,000	2,500,000	1. 사업의 필요성: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실시에 따라 업 무용 노트북 필요 2. 소요예산액: 1,250,000원*2대=2,500,000원

배곤초등학교회계 세입・세출 예산서

예<u>산 총칙</u>

예산 구분 :추경4회

예산확정일	예산액	3,556,903,000

제1조 2020학년도 배곧초등학교회계 세입.세출예산총액은 세입.세출 각각 3,556,903,000원으로 하며 세입.세출의 명세는 "세입.세출예산서"와 같다.

제2조 2020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표 "명시이월비 명세서"와 같다.

제3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, 학교발 전기금 전입금 또는 선택적 교육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 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.

제5조 ①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가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1. 교원연구비, 관리 및 직책 수당, 겸직수당
- 2. 학교회계 직원의 인건비
- 3. 각종 공과금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7]	7)	구기	ي ت	'	경정 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증감	산출기초(원)	비고
장	관 전수		목	원가통계비목	2,971,777	, – ,	138,144		
1.			브리	전수입	4,800	3,000	1,800		
	1.3		고보		4,800	3,000	1,800		
		1. 4		- ш	,				
			1. 写	・	4,800	3,000	1,800	(서리저)여구하교우여(처스너 비즈쿠) :	
				1.국고보조금	4,800	3,000	1,800	1,800,000원 * 1교=	
	2.~	방자	치단	체이전수입	454,236	622,188	-167,952		
		1.비	법정	이전수입	322,536	490,488	-167,952		
			1.기	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	322,536	490,488	-167,952		
				1.급식비보조금(기초)	322,536	490,488	-167,952	<u>찰</u> 현미구입비(시보조) : -20,000원*39포= -780,000	
								무상급식비(시보조) : -167,172,000원*1교= -167,172,000	
	3.3	방교	육자	치단체이전수입	2,511,741	2,207,445	304,296		
		1. 11	육비	특별회계전입금수입	2,511,741	2,207,445	304,296		
			1.亚	육비특별회계전입금	2,511,741	2,207,445	304,296		
				1.학교운영비전입금	854,346	856,308	-1,962	초등 학교기본운영비 : -1,320,000원 * 1교 = -1,320,000	
								병설유치원기본운영비 : -642,000원 * 1교 = -642,000	
				2.목적사업비전입금	984,923	495,753	489,170	(성립전)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: 35,280,000 35,28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: 10,427,000 10,427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: 10,427,000 10,427,000원 * 1교 =	
								초등생존수영교육비 : -15,372,000원 * 1교 = -15,372,000	
								(성립전)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금 : 540,000 54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특수학급 사회복무요원인건비 : 2,160,000 2,16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: 460,000 46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행정실무사 인건비(9~12월) : 57,600,000 57,60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초등아동특별돌봄지원금 : 356,400,000 356,40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(국고)교원용 컴퓨터 구매지원금 : 11,400,000 11,400,000원 * 1교 =	
								(성립전)코로나19대응 기초학력강사지원금 : 15,680,000 15,680,000원 * 1교 =	
								코로나19방역물품지원금 : 4,088,000원 * 1교 = 4,088,000	
								보건교사온라인보수교육비 : 80,000원 * 1교 = 80,000	

			ュ	} 목	경정	기정	ul 그 ス키	제호카드(이)	ul –
장	관	항	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비교증감	산출기초(원)	비고
				3.급식비지원금	591,622	774,534	-182,912	초등 무상급식비 : -182,912,000원 * 1교 = -182,912,000	
2.자	체수	입			535,151	576,169	-41,018		
	1.학	·부모	부담:	수입	530,131	564,711	-34,580		
		1.수	익자	부담수입	530,131	564,711	-34,580		
			1.급	식비	57,559	90,050	-32,491		
			2.우유급식비		0	32,491	-32,491	유치원 우유급식비 : -380원*64명*90일-1,000 원= -2,189,000	
								초등 우유급식비 : -380원*886명*90일-1,000원 -30,302,000 =	
	4.졸업앨범비				12,801	14,890	-2,089		
	1.졸업앨범비				12,801	14,890		초등 졸업앨범비 : -3,000원*274명+42,000원= -780,000	
								유치원 졸업앨범비 : -40,000원*33명+11,000원 -1,309,000	
	2. 행	정활	동수	입	5,020	11,458	-6,438		
		1.사	용료	및수수료	3,180	8,800	-5,620		
			1.사	용료및수수료	3,180	8,800	-5,620		
				1.사용료	3,180	8,800	-5,620	학교시설사용료 : -5,620,000원*1회= -5,620,000	
		2.7	타행	정활동수입	1,840	2,658	-818		
			1.이	자수입	948	1,498	-550		
				1.이자수입	948	1,498	-550	예금이자 : -550,000원*1회= -550,000	
			2.7]	타행정활동수입	892	1,160	-268		
				1.기타행정활동수입	892	1,160	-268	폐식용유매각대금 : -400,000원*1회= -400,000	
								기타행정활동수입 : 132,000원*1회 = 132,000	
3.7	타수	입			49,975	49,987	-12		
	1.전	년도	이월·	급	49,975	49,987	-12		
		2.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			1,470	1,482	-12		
			1.정	산대상재원사용잔액	1,470	1,482	-12		
				1.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	1,470	1,482	-12	2019창의적교육과정반환금 : -12,000원*1회= -12,000	
			세	입합계	3,556,903	3,459,789	97,114		

		사임		경정	기정	비교	산출기초(원)	
정책 단위	세부	세부항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증감	112/14(11)	
1.인적자원	운용			210,194	211,594	-1,400		
2. 亚	직원 복	-지 및 역	량강화	146,234	147,634	-1,400		
	2. 亚石	직원복지		142,234	143,634	-1,400		
		1.[초]이	전비	300	1,500	-1,200		
			1.여비	300	1,500	-1,200	이전비 : -400,000원*3명=	-1,200,000
		3.[초]기	타교직원복지지원	1,600	1,800	-200		
			1.교직원복지비	1,600	1,800	-200	특근매식비 : -8,000원*10명*10일=	-800,000
							특수운영직군피복비 : 200,000원*3명=	600,000
2.학생복지	/교육2	부차 해소		1,566,873	1,529,871	37,002		
1. 급~	식 관리			1,090,536	1,417,757	-327,221		
	1.학교	고급식운영		1,090,536	1,417,757	-327,221		
		1.[초]조	리사인건비	15,162	10,830	4,332		
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12,864	9,162	3,702	(성립전)조리사인건비(교특) : 1,160,000*1명 =	1,160,000
							(성립전)조리사인건비(교특) : 1,686,000*1명 =	1,686,000
							(성립전)위험수당 : 100,000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100,000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556,000*1명 =	556,000
							(성립전)연차수당 : 100,000*1명 =	100,000
			2.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	2,298	1,668	630	(성립전)건강보험 : 50,000*1명 =	50,000
							(성립전)건강보험 : 100,000 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100,000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100,000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100,000*1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50,000*1명 =	50,000
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30,000*1명 =	30,000
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100,000*1명 =	100,000
		2.[초]조	-리실무사인건비	261,469	226,189	35,280		
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239,869	204,589	35,280	(성립전)(교특)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 리실무사 인건비 지원 : 5,040,000 *7명 =	35,280,000

		사업		경정	기정	비교	산출기초(원)	
책 단위	세부	세부항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증감	(건물/ 소(편)	
		4.[초]급	식재료구입비	453,627	804,491	-350,864		
			1.급식용식재료비	453,627	804,491	-350,864	찰현미구입비 : -20,000원*39포=	-780,000
							급식용 식재료비 : -35,008,400원*10월=	-350,084,000
		5.[초]우	유급식비	0	30,302	-30,302		
			1.우유대금	0	30,302	-30,302	초등 우유급식비 : -380원*886명*90일 -1,000원=	-30,302,000
		8.[유]우	유급식비(유)	0	2,189	-2,189		
			2.우유대금	0	2,189	-2,189	유치원 우유급식비 : -380원*64명*90일 -1,000원=	-2,189,000
		10.[초]	조리실무사인건비(교특)	57,827	41,305	16,522		
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50,768	35,586	15,182	(성립전)조리실무사인건비(교특) : 750,000*4명 =	3,000,000
							(성립전)조리실무사인건비(교특) : 1,980,250*4명 =	7,921,000
							(성립전)위험수당 : 50,000*4명 =	200,000
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1,015,250*4명 =	4,061,000
			3.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	6,859	5,519	1,340	(성립전)건강보험 : 75,000*4명 =	300,000
							(성립전)건강보험 : 60,000*4명 =	240,000
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100,000*4명 =	400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25,000*4명 =	100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50,000*4명 =	200,000
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25,000*4명 =	100,000
2.보건]관리			85,579	97,187	-11,608		
	1. 학성	생및교직원	보건안전관리	65,616	77,224	-11,608		
		3.[초]학	생건강검사	0	20,776	-20,776		
			1.학생복지비	0	20,776	-20,776	1,4학년 학생건강검사비 : -22,000원*290 명-12,000원*320명=	-10,220,000
							2,3,5,6학년 소변검사비 : -1,100원*1,160 명=	-1,276,000
							2,3,5,6학년 구강검사비 : -8,000원*1,160 명=	-9,280,000
		4.[초]보	건실운영	40,249	35,169	5,080		
			1.일반수용비	1,680	1,600	80	(교특)보건교사보수교육비 : 40,000원*2명 =	80,000
			4.학생복지비	37,869	32,869	5,000	감염병예방관리 : 5,000,000원*1회=	5,000,000
		6.[초]초	등학교보건관리(교특)	12,923	8,835	4,088		

			사업]	경정	기정	비교	21 ~ -1 ~ / 61 \	
정책	단위	세부	세부항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증감	산출기초(원)	
				1.학생복지비	12,923	8,835	4,088	코로나19댕응 방역물품지원금 : 2,200원 *1,858명= 4,088,	,000
	3.교육	우 격차	해소		21,520	0	21,520		
		1.[국	고]기타	교육격차해소 지원	21,520	0	21,520		
			1.[국고]	[초]기타 교육격차해소	지원 21,520	0	21,520		
				1.기간제직원인건비	16,320	0	16,320	(국고)기초학력강사인건비 : 1,960,000원 *4월*2명= 15,680,	000
								(자체)기초학력강사 월차수당 : 80,000원 *4월*2명=	.000
				2.학생지원금	4,000	0	4,000	(성립전)(교특)기초학력 강사 인건비 : 15,617, 7,808,240*2명 =	,000
								(교특)기초학력 강사 인건비 : -7,808,500 -15,617, 원*2명=	000
								(교특)기초학력 강사 4대보험 : -31,500원 *2명= -63,	000
								(성립전)(교특)기초학력 강사 4대보험 : 63, 31,500 *2명 =	,000
								(자체)기초학력강사인건비및보험료 : 4,000, 2,000,000원*2명=	000
				3.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	1,200	0	1,200	(자체)기초학력강사 4대보험기관부담금 : 150,000원*4월*2명=	000
	4. 학식	생복지			369,238	14,927	354,311		
		1.[국	고]학생복	시운영	369,238	14,927	354,311		
			1.[초]졸	업앨범제작	11,550	12,330	-780		
				1.교육운영비	11,550	12,330	-780	졸업앨범구입비(수익자): -3,000원*274명 +42,000원= -780,	000
			3.[국고]	[초]아동특별돌봄지원(최	356,400	0	356,400		
				1.학생복지비	356,400	0	356,400	(성립전)(국고)초등아동특별돌봄지원금 : 356,400, 200,000원*1,782명=	000
			4.[유]졸	업앨범비(유)	1,251	2,560	-1,309		
				1.교육운영비	1,251	2,560	-1,309	유치원졸업앨범비(수익자): -40,000원*33 명+11,000원= -1,309,	000
3.기년	본적 교	1육활동	=		514,289	522,265	-7,976		
	1.亚亚	과 활동	-		463,441	471,417	-7,976		
		1. 교고	사활동지원]	160,441	164,615	-4,174		
			9.[초]기	타교과활동지원	20,421	24,595	-4,174		
				1.운영수당	19,766	23,940	-4,174	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: -99,380원*14반 *3월-1,000원= -4,174,	,000
		2.과학	학교과활동		50,410	36,010	14,400		
			3.[초]행	정실무사(과학)인건비	28,910	14,510	14,400		
	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25,727	12,900	12,827	(성립전)행정실무사인건비(과학) : 8,976, 8,976,000*1명 =	000

		사업		경정	기정	月亚	산출기초(원)	
정책 단위	세부	세부항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증감	t e / ± (t)	
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3,000,000*1명 =	3,000,000
							(성립전)연차수당 : 851,000*1명 =	851,000
			2.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	3,183	1,610	1,573	(성립전)건강보험 : 561,000*1명 =	561,000
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605,000*1명 =	605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245,000*1명 =	245,000
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162,000*1명 =	162,000
	3.체호	국교과활동		37,450	52,822	-15,372		
		1.[초]체	육교과활동	5,200	5,200	0		
			2.교직원복지비	600	1,200	-600	체육전담교사피복비 : -200,000원*3회=	-600,000
			3.교육운영비	4,600	4,000	600	체육교육물품구입비 : 200,000원*3회=	600,000
		3.[초]생	존수영교육활동	15,000	30,372	-15,372		
			1.교육운영비	15,000	30,372	-15,372	(교특)생존수영교육비 : -15,372,000원*1 교=	-15,372,000
		4.[초]학	생스포츠클럽운영	13,250	13,250	0		
			2.교육운영비	7,250	7,250	0	(교특)학생보험비 : -300,000원*6회=	-1,800,000
							(교특)학생음료등구입비 : -100,000원*3회 =	-300,000
							(교특)물품구입비 : 420,000원*5회=	2,100,000
	5.특~	누교육교괴	-활동	36,376	33,756	2,620		
		3.[초]사	회복무요원(특수)인건비	4,320	2,160	2,160		
			1.기간제직원인건비	4,320	2,160	2,160	(성립전)(교특)사회복무요원인건비 : 720,000원*3개월=	2,160,000
		4.[초]기	타특수교육운영	1,020	560	460	, - , -	
			2.학생복지비	460	0	460	(성립전)(교특)특수교육대상자원거리통학 비 : 459,800원*1학기=	460,000
	6.유키	시원교과횔	농	79,230	84,680	-5,450		
		1.[유]교	과운영	12,546	17,996	-5,450		
			1.교육운영비	11,046	16,496	-5,450	배곧한마당축제물품구입비 : -10,000원*64 명=	-640,000
							스페셜체험데이행사비 : -442,000원*10회=	-4,420,000
							학부모참여수업 재료비 : -500,000원*1회=	-500,000
							교육과정운영물품구입 : 110,000원*1회=	110,000
4.선택적 5	고육활동	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		602,283	597,963	4,320		

정책	단위	세부	사업		경정 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(원)
	1. 방교	· 라후학3	L 교 운영		564,373	560,053	4,320	
		1. 방괴	바 후학교운	- 영	429,425	425,105	4,320	
			3.[초]방	과후학교강사수당	404,520	403,980	540	
				1.운영수당	312,120	311,580	540	(성립전)(교특)특수학급방과후지원금 : 540,000 90,000원*3회*2명=
			4.[초]방	과후학교 보조인력운영	15,180	11,400	3,780	
				1.기간제직원인건비	14,940	11,160	3,780	(자체)방과후코디 인건비 : 630,000원*6개 월= 3,780,000
	2.독시	활동		I	37,910	37,910	0	
		1.독서	1활동운영	}	37,910	37,910	0	
			1.[초]도	서구입	27,520	27,000	520	
				1.도서구입비	27,520	27,000	520	도서구입비 : 520,000원*1회= 520,000
			3.[초]독	서활동운영	50	1,610	-1,560	
				1.운영수당	0	760	-760	작가초청 강사비 : -260,000원*2회= -520,000
								독서프로그램 강사비 : -30,000원*8회= -240,000
				2.교육운영비	50	850	-800	작가초청 행사비 : -400,000원*2회= -800,000
			4.[초]독	서관련행사운영	2,940	1,900	1,040	
				1.교육운영비	2,940	1,900	1,040	독서행사물품구입 : 1,040,000원*1회= 1,040,000
5. 교	육활동	지원		I	223,908	149,234	74,674	
	1.교득	-업무	운영		90,163	61,363	28,800	
		1.교두		!	90,163	61,363	28,800	
			4.[초]행	정실무사(교무)인건비	58,480	29,680	28,800	
	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51,888	26,230	25,658	(성립전)행정실무사인건비(교무): 18,182,000 9,091,000*2명 =
	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2,750,000*2명 = 5,500,000
								(성립전)연차수당 : 988,000*2명 = 1,976,000
				2.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	6,592	3,450	3,142	(성립전)건강보험 : 502,000*2명 = 1,004,000
	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554,000*2명 = 1,108,000
	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325,000*2명 = 650,000
	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190,000*2명 = 380,000
	2.생활	발지도 (L 운영		37,693	38,669	-976	

		사업		경정	기정	申記	산출기초(원)	
]책 단위	세부	세부항목	원가통계비목	예산액	예산액	증감		
	1.학	생생활상담	·지도	18,560	20,560	-2,000		
		3.[초]학	부모폴리스운영	100	600	-500		
			1.일반수용비	0	500	-500	회=	-200,000
							어머니폴리스 피복구입비 : -150,000원*2 회=	-300,000
		4.[초]장	애인식개선교육	0	1,500	-1,500		
			1.교육운영비	0	1,500	-1,500	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극공연비 : -1, -1,500,000원*1회=	,500,000
	2.학	교폭력예빙	-	18,083	17,059	1,024		
		1.[초]안	전한학교환경구축	15,633	14,609	1,024		
			1.기간제직원인건비	9,100	8,076	1,024	배움터지킴이사회복무요원인건비 : 204,800원*5월=	,024,000
3.연	- 년구학교	운영		4,800	3,000	1,800		
	1.[국	구고]연구학	-교운영	4,800	3,000	1,800		
		1.[국고]	[초](국고)청소년비즈쿨	4,800	3,000	1,800		
			1.운영수당	1,280	780	500	(성립전)업무지원수당 : 25,000원*1인*10 개월=	250,000
							(성립전)책임자지원수당 : 25,000원*1인 *10개월=	250,000
			2.교육운영비	3,270	1,970	1,300		,300,000
4. 힉	나습지원	실 운영		77,252	33,202	44,050		
	2.[국	·고]정보회	-실운영	71,112	27,062	44,050		
		1.[초]학	교정보화지원	600	2,600	-2,000		
			1.교육운영비	600	2,600	-2,000	플로터소모품구입 : -100,000원*20회= -2,	,000,000
		4.[초]정	보화기자재교체및관리	54,442	19,792	34,650		
			1.교육운영비	1,500	2,000	-500	정보화기기수리비 : -100,000원*5회= -	-500,000
			2.비품구입비	51,150	16,000	35,150	교원용컴퓨터및모니터구입 : 950,000원*37 대=	, 150, 000
		5.[국고]	[초](국고)교원용컴퓨터	국고[4], 원)아	업 0	11,400		
			1.비품구입비	11,400	0	11,400	(성립전)교원용컴퓨터및모니터구입 : 11, 950,000원*12회=	,400,000
5. <u>I</u>	고육여건	개선		14,000	13,000	1,000		
	1. 교	육환경개선	 !	14,000	13,000	1,000		
		1.[초]교	실환경개선	4,000	3,000	1,000		
			1.비품구입비	4,000	3,000	1,000	교실등 내부비품구입비 : 500,000원*2회= 1,	,000,000

정책 단위	위 세부	사업 세부항목		경정 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(원)	
		2.[초](고	교특)Wee클래스구축비	10,000	10,000	0		
			1.일반수용비	336	300	36	Wee클래스구축 빔설치비 : 36,000원*1회=	36,000
			2.교육운영비	604	200	404	Wee클래스구축 교재교구구입비 : 20,170원 *20권=	404,000
			3.시설비	4,330	4,500	-170	Wee클래스구축 인테리어 공사비 : -170,000원*1회=	-170,000
			4.비품구입비	4,730	5,000	-270	Wee클래스구축 비품구입비 : -270,000원*1 회=	-270,000
6.학교 일	반운영	1		437,886	447,380	-9,494		
1. ই	학교기관	운영		135,309	126,861	8,448		
	1.부/	서기본운영		68,705	79,465	-10,760		
		2.[초]교	육행정실운영	47,467	58,227	-10,760		
			1.일반수용비	34,040	37,640	-3,600	프린터토너구입 : -180,000원*4종*5대=	-3,600,000
			3.여비	6,060	15,720	-9,660	관내외출장여비 : -20,000원*69명*7월=	-9,660,000
			4.비품구입비	5,907	3,407	2,500	노트북등 비품구입비 : 1,250,000원*2대=	2,500,000
	2.병	설유치원기	본운영	36,044	31,236	4,808		
		2.[유]유	치원 시설장비유지	12,978	11,170	1,808		
			1.일반수용비	10,928	9,120	1,808	유치원 교구소독 및 세척 : 450,000원*1회 =	450,000
							유치원 환경개선비 : 679,000원*2회=	1,358,000
		3.[유]유	치원운영	16,186	13,186	3,000		
			5.비품구입비	7,041	4,041	3,000	유치원 비품 및 기자재구입 : 500,000원*6 회=	3,000,000
	3. 행기	정지원인력	순용	30,560	16,160	14,400		
		1.[초]행	정실무사(행정)인건비	30,560	16,160	14,400		
			1.무기계약직원인건비	27,162	14,280	12,882	(성립전)행정실무사인건비(행정) : 9,246,000*1명 =	9,246,000
							(성립전)퇴직적립금 : 3,000,000*1명 =	3,000,000
							(성립전)연차수당 : 636,000*1명 =	636,000
			2.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	3,398	1,880	1,518	(성립전)건강보험 : 500,000*1명 =	500,000
							(성립전)국민연금 : 658,000*1명 =	658,000
							(성립전)고용보험 : 215,000*1명 =	215,000
							(성립전)산재보험 : 145,000*1명 =	145,000
2.	· 설 장비	위 유지		298,307	316,249	-17,942		

정책	단위	세부	사업 세부항목		경정 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(원)
		1.학교	고시설장비	[유지	298,307	316,249	-17,942	
			1.[초]공	공요금및제세공과금	101,821	110,263	-8,442	
				2. 상하수도료	7,000	12,000	-5,000	상하수도요금 : -1,000,000원*5월= -5,000,000
				3.연료비	16,000	20,000	-4,000	도시가스비 : -1,000,000원*4월= -4,000,000
				4.기타공공요금	10,521	9,963	558	전화요금 : 358,000원*1월= 358,000
								우편요금 : 20,000원*10회= 200,000
			2.[초]시	설일반관리	100,839	100,339	500	
				1.일반수용비	100,839	100,339	500	시설관리소모품구입 : 500,000원*1회= 500,000
			3.[초]시	설미화관리	6,000	16,000	-10,000	
				1.일반수용비	6,000	16,000	-10,000	화장실및복도기계청소비 : -10,000,000원 *1회=
7.학교	고 재무	-활동			1,470	1,482	-12	
	1. 반학	한금			1,470	1,482	-12	
		1. 반혹	한금		1,470	1,482	-12	
			1.[초]정	산대상재원집행잔액	1,470	1,482	-12	
				1. 반환금	1,470	1,482	-12	2019창의적교육과정반환금 : -12,000원*1 회=
			세출합	· 기	3,556,903	3,459,789	97,114	

2020학년도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사일정 변경(안)

안건 번호 3 제출연월일: 2020.10. 6.(화) 제 출 자: 배곧초등학교장 담 당 자: 교사 유진영

1. 제안 이유

- 가.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휴업기간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
- 나.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(2020.8.14.)에 따른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안

2. 근거

- 가.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(수업일수 등)
- 나.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개정 알림 (경기도교육청-2020.8.31.)

3. 주요 내용

가.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현행	제12조(수업일수 등)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<u>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</u>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<u>학년도 개시 30일</u>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생략
개정안	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(수업일수 등) 제12조 1항 단서 중 "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"로, "각 학년도 개시 30일"을 "학년도가 시작되기"로, "보고하여야"를 "보고해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2조(수업일수 등) 1.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수업일수의 10분의 1 2.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: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

- 나.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개정(2020.8.14.)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5월 27일 개학 이전까지 휴업명령에 의한 휴업일(총59일) 중 기감축한 일수(18일)를 제외하고 41일 중 유치원 교육공동체(학부모 포함)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치원별로 수업일수 감축 여부 및 일수 결정 가능함(경기도교육청-2020.8.31.)
- 다. 원격수업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님들의 보육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사일정 종료일을 설문조사 함.
- 라. 유치원 학부모님 대상「유치원 교육과정 학사 일정 종료일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학사일정 종료일 중 가장 많은 응답수가 2020. 12. 31.(목)로 결정됨

학사일정 종료일	응답수
2020. 12. 7.(월)	24%
2020. 12. 29.(화)	31%
2020. 12. 31.(목)	45%

구분	일시	비고
수료식, 졸업식	2020. 12. 31.(목)	
겨울방학	2021. 1. 1.(금)~2021. 2. 28.(일)	59일

4. 수업일수

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수업 일수	0	0	3	22	23	8	21	19	21	22	139

5. 학사일정 변경 사항

변경 전	변경 후
2021. 2. 3.(수): 수료 • 졸업식	2020. 12. 31.(목): 수료 • 졸업식

2021학년도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내부규정(안)

안건 번호 4 제출연월일: 2020. 10. 7.(수) 제 출 자: 배곧초등학교장 담 당 자: 교사 유진영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학년도 유아모집을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- 나. 2021학년도 유아모집 내부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

2. 근거

가.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(입학)

제19조의 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- 나.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2(민감정도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다. 2017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추진 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69.2017.1.10.)
- 라.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제8조(학급편제), 제9조(원아정원), 제15조(입학), 제16조(재입학)
- 마.「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」(2019.6.18.)
- 바.「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계획 수립」유아교육과-11016(2020.10.5.)

3. 주요내용

- 가. 총칙
- 나. 모집정원 및 지원 자격
- 다. 선발 방법 및 모집
- 라. 제출서류
- 마. 추첨 및 등록
- 바. 운영시간
- 사. 규정의 개정

붙임 2021학년도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내부규정(안) 1부. 끝.

2021학년도 유아모집 내부규정

2020, 10, 20,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

근

거

- 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(입학)
 - 제19조의 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- □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□ 2017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추진 계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69.2017.1.10)
- 🕒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제8조(학급편제), 제9조(원아정원), 제15조(입학), 제16조(재입학)
- □ 「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・선발에 관한 조례」(2019.6.18.)
- □ 「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 수립」유아교육과-11016(2020.10.5.)

제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선발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 범위)

이 원칙은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2장 모집정원 및 지원 자격

제 3조(모집정원)

1. 본원의 **정규 교육과정** 모집정원은 만3세 **16명**, 만4세 **22명**, 만5세 **26명**, 총 **64명**으로 한다.

				모집인원		
모집대상	학급수	지원대상	정원	교육과정	교육과정 +방과후과정	
만3세반	1	2017. 1. 1. ~ 2017. 12. 31.	16명	6명	10명	
만4세반	1	2016. 1. 1. ~ 2016. 12. 31.	22명	3명	3명	
만5세반	1	2015. 1. 1. ~ 2015. 12. 31.	26명	4명	1명	

2.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유아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하여 모집한다.

제 4조(지원 자격)

- 1. 학구 제한을 두지 않으며
- 2. 만3세 2017. 1. 1 ~ 2017. 12. 31일생
- 3. 만4세 2016. 1. 1 ~ 2016. 12. 31일생
- 4. 만5세 2015. 1. 1 ~ 2015. 12. 31일생 유아로 모집한다.

제3장 선발 방법 및 모집

제 5조(홍보방법)

- 1. 홍보기간은 2020. 10. 21.(수) ~ 2020. 11. 25.(수) 16:30까지로 한다.
- 2. 유치원 홈페이지 및 처음 학교로(www.go-firstschool.go.kr)」에 탑재
- 3. 본원의 학부모에게 안내문 클래스팅 탑재
- 4. 유치원 정문에 유아모집 현수막 부착

제 6조(선발 방법)

1. 재입학 유아

- 가. 재입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설문조사 기간 내에 재원 희망여부를 응답한다.
- 나. 방과후과정 희망 유아가 맞벌이 부모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에는 교육과정반으로 배정한다.
- 다. 방과후과정 정원 초과 시에는 희망 유아끼리 공개추첨을 한다.
- 라.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「처음 학교로(www.go-firstschool.go.kr)」에서 재입학 유이들을 일괄 등록한다.

2. 신입학 유아

- 가.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모집정원에서 재입학 희망 유아를 제외한 인원만큼 모집한다.
- 나. 모집 기간 내에 학부모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「처음 학교로(www.go-firstschool.go.kr)」에서 희망순(1,2,3)별로 유치원 접수, 선발하며 하나의 유치원만 선발 가능(중복선발제한, 재원생은 2개원까지 지원가능)
- 다. 학부모는 교육과정반과 교육과정+방과후과정반 중 1가지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며, 모집 정원 초과 시 유치원압학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반과 교육과정+방과후과정반을 동시 추첨하는 별도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.
- 라. 쌍생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추첨 및 당락 방식 선택 결정한다. 쌍생아 체크시, 하나의 군으로 접수되어 연속된 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을 진행하고 한 명이 탈락할 경우 최우선 대기번호 부여 한다.
- 마. 모집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「처음 학교로(www.go-firstschool.go.kr)」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관련 서류는 제외한다.

3. 방과후과정 유아

- 가. 방과후과정은 법정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양육자의 취업이 확인될 경우, 맞벌이로 인정한다.
- 나. 방과후과정을 지원한 학부모는 모집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본 유치원으로 제출한다.
- 다.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「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침」을 근간으로 한다.

4. 결원 시 중도 입학유아

- 가. 입학 대기 유효기간은 2021학년도 재원신청 기간 전까지로 한다.
 - 1) 재원신청 기간 이후에는 유아모집 공정성 및 모집 공고의 모집인원 확정을 위해 연령별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.

- 2) 시스템상의 대기자 유효기간은 2020. 12. 31.까지이며 익년(2021년) 1. 1. 이후부터는 유치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관리한다.
- 3) 대기자 유효기간은 2022학년도 재원신청 전까지로 하며 하나의 군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교육과정, 교육과정+방과후과정을 통합하여 대기자 관리를 한다.
 - 가) 「처음학교로」 대기자 관리: 2020 12. 1.(화)~2020. 12. 31.(목)
 - 나) 「처음학교로」 순위는 등록기간 이후에 자동 변경됨

5. 조기 입학자 및 취학 유예자

- 가. 모집 기간 내에 미달 되었을 경우에만 입학을 할 수 있다.
- 나. 조기 입학자 및 취학 유예자가 유치원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한다.

제 7조(우선순위 선발 대상자)

- 1. 우선순위의 유아는 아래 순에 의해 우선 선발하되,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며 경기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변경·적용될 수 있다. (단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절상·적용)
 - ※ 온라인 검증 가능한 우선모집 자격 대상은 (보건복지부)법정저소득층, (보훈처)국가보훈대상자, (통일부)북한이탈주민입니다.
- 2. 재입학 유아
 - 가. 재원생이 재입학 신청서(재입학원서)를 제출할 경우 우선으로 선발한다.
 - 나. 재원생이 방과후과정반에 신청할 경우 제9조 3항의 증빙서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우선으로 선발한다.
- 3. 신입학 유아

	구분	대상
우	1순위(100%)	법정저소득 자녀
· 선	2순위(3%)	국가보훈대상자 자녀
_	3순위(3%)	북한이탈주민대상
모 집	4순위(30%)	다문화가정 자녀(외국인 제외), 다자녀가정 자녀(3자녀 이상), 한부모 가정 자녀, 장애부모가정 자녀
	일반모집	일반자녀

제 8조(원서 교부 및 접수)

- 1.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「처음 학교로(www.qo-firstschool.go.kr)」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한다.
 - 가. 우선모집 원서접수 기간. 2020. 11. 2(월) 9:00~11. 4(수) 18:00
 - 나. 일반모집 원서접수 기간, 2020, 11, 18.(수) 9:00~11, 20.(금) 18:00
 - ※ 일반모집 본 접수기간 동안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모집 사전접수를 진행한다. 일반모집 사전 접수기간 2020.11. 17.(화) 9:00~23:59 (16:30 이전 현장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 사전 연락 후 18:00까지 현장접수 가능함)
- 2.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유치원 교무실에 전용 컴퓨터를 개설하여 현장(대리)접수를 지원한다.
 - 가. 현장접수 가능 시간: 14:30~16:30(16:30 이전 현장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 사전 연락 후 18:00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함)

- 나.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: 유아의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,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, 우선순위 증빙서류
- 3. 접수결과 확인: 처음학교로 접수결과 모바일 확인 가능(모바일 확인은 PC 화면을 통해 '처음학교로'로 접수한 경우만 가능하며,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에서 확인 가능)
 - ※ 모바일주소: http://www.go-firstschool.go.kr

제4장 제출서류

제 9조(제출서류)

- 1. 모집에 따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무효(접수 반려)로 처리한다.
- 2. 우선모집 증빙서류는 유치원 방문 또는 배곧초병설유치원 대표 이메일(shbaegot@korea.kr)로 제출한다. (4순위만 해당)
 - 가. 우선모집 증빙서류 제출 기간: 2020. 11. 2.(월) 14:30~11. 4.(수) 16:30
 - 나. 메일접수 시 메일 제목은 유아연령, 이름, 증빙서류 명으로 명시하며,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로 제출한다.
 - ※ 우편, 팩스, 메일로 증빙서류 제출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 필요(메일회신, 전화확인 등)
 - 다. 제출 기간 안에 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된다.
 - 라. 우선모집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.

<우선순위 대상별 증빙서류>

구분	대상	증빙서류	적용범위		
1순위	법정저소득 자녀	없음 (보건복지부 연계하여 자격 여부 검증)	각 연령 모집인원 내 100% 적용		
2순위	국가보훈대상자 자녀	없음 (보훈처와 연계하여 자격 여부 검증)	각 연령 모집인원의 3% 적용		
3순위	북한이탈주민 대상	없음 (통일부와 연계하여 자격 여부 검증)	각 연령 모집인원의 3% 적용		
	다문화 가정의 자녀 (외국인 제외)	기본증명서 1부	교육복지 정책 반영		
ᇪᄉᅁ	다자녀 가정의 자녀 (3자녀 이상)	주민등록등본 1부	저출산 대책 반영 (다자녀에 태아는 인정하지 않음)	각 연령 모 집 인 원 의	
4순위	한부모 가정의 자녀	가족관계증명서 1부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는 구분 됨	30% 적용	
	장애부모의 자녀(2등급 또는 중복장애)	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	장애등급 1급, 2급과 3급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 인으로 장애 중복인 경우		

3. 방과후과정 증빙서류는 유치원 방문 또는 배곧초병설유치원 대표 이메일(shbaegot@korea.kr)로 제출한다.(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)

- 가. 우선모집 대상자 중 방과후과정 증빙서류 제출 기간. 2020. 11. 2(월) 14:30~11. 4(수) 16:30
- 나. 일반모집 대상자 중 방과후과정 증빙서류 제출 기간. 2020. 11. 17.(화) 14:30~11. 20.(금) 16:30 (현장접수로 증빙서류 제출시, 16:30 이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 사전 연락 후 18:00까지 현장접수 가능 / 유치원: 031) 8099 9770)
- 다. 메일접수 시 메일 제목은 유아 연령, 이름, 증빙 서류명으로 명시하며, 증빙서류는 스캔 파일로 제출한다.
- 라. 제출 기간 안에 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된다.
- 마. 방과후과정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.

<방과후과정 신청자 증빙서류>

구분	증빙서류						
	필수	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	택 1부				
취업자	추가	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 직장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고용·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	택 1부				
자영 업자	필수	사업자등록증명원 *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	택 1부				
	추가	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세무서) 중 1부	택 1부				
기타	필수	 프리랜서: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 내역서 대학원 재학: 대학원 재학증명서 일시적 실작: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구직 활동증명서 (3개월 후 취업 서류 제출) 	해당 서류 제출				

※ 맞벌이 증명을 위해 부·모 모두 서류 제출(부모 각 필수 1부, 추가 1부씩 총 4부)

제5장 추첨 및 등록

제 10조(추첨 및 등록)

- 1. 우선모집 선발(추첨)·결과발표: 2020. 11. 9.(월)
- 2. 우선모집 인터넷 등록기간: 2020. 11. 10. (화) 9:00~11. 11.(수) 18:00
- 3. 일반모집 선발(추첨)·결과발표: 2020. 11. 25.(수)
- 4. 일반모집 인터넷 등록기간: 2020. 11. 26.(목) 9:00~11. 30.(월) 18:00
- 5. 추첨 방법: 모집 정원 초과 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「처음 학교(www.go-firstschool.go.kr)」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순 추첨 선발·발표
- 6 선발결과 확인: 처음학교로 접수결과 모바일 확인 가능(현장접수자는 유치원에서 확인 가능)
 - ※ 모바일주소: http://www.go-firstschool.go.kr

제6장 운영시간

제 11조(운영 시간)

- 1. 교육과정반(월~금): 09:00~13:30(4시간30분)
- 2. 방과후과정반: 13:30~17:00(3시간30분) 총 8시간(교육과정 4시간30분+방과후과정 3시간30분)
- 3. 방학 중 행복한울타리 운영 (여름, 겨울방학 각 1주~2주 미운영)
 - 가. 방과후과정 맞벌이 자녀 중 희망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.
 - 나. 단, 2021학년도 행복한 울타리 중심 유치원 등의 세부운영 사항은 시흥교육지원청의 행복한 울타리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7장 규정의 개정

제 12조(개정의 제안)

유아모집 규정의 개정은 매해년도 경기도교육청,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모집 안내 및 유치원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 13조(규정의 개정)

유아모집 규정은 매해년도 유아모집 내부결재 시 개정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기타)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.

2020학년도 4분기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(안)

안건 번호 5 제출연월일: 2020. 10. 12.(월) 제 출 자: 배곧초등학교장 담 당 자: 교사 서재호

1. 제안 이유

2020학년도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4분기 방과후학교 운영 실시

2. 근거

코로나19대응 학시운영 변경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,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-8800(2020.9.17.)

3. 주요 내용

- 가. 코로나19와 등교수업 재개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에 따라 학부모 의견 조사를 실시함.
- 나. 설문 조사(2020.10.6.~10.7.) 결과

1801명 중 1,299명이 응답을 한 결과 354명(27%)이 4분기 '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한다'는 의견이 있어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결정함.

4. 운영 기간

분기	구분	구분 운영 기간	
4분기	수업 기간	2020. 11. 2.(월)~2021. 1. 29.(금), 3개월 ※보강 기간 : 2021. 1. 25.(월)~1. 29.(금)	12주 수업
	수강 신청	2020. 10. 19.(월)~2020. 10. 21.(수) (3일간)	

※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학교의 학사 운영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끝.